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8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안도걸・안규백・정을호

서미화 · 조인철 · 서삼석

이기헌 · 김태년 · 강준현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

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제3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2. 2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 을 합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 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	
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u>15만원</u>	1 <u>30만원</u>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 2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과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을 합한 금액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	<u><</u> 삭 제>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	③
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1

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u>30만원</u>	- <u>50만원</u>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2
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u>50만원</u>	- <u>80만원</u>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3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우: 연 <u>70만원</u>	<u>100</u> 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